

書面答辯書

- 질의 의원 : 김판조 의원
- 답변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 질의 요지 :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지침관련 공문 사본 제출

□ 답변내용

-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지침관련 공문 사본 1부.
 - 2003 수해복구예산조기집행지침
(관련대호 : 대구시 회계13310-21069(2003.10.2))
 - 달성군 자체 수해복구 추진계획
(관련대호 : 달성군 회계41341-453(2003.10.14))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04년 12월 일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마음을 하나로 대구를 세계로



대구광역시

<http://www.daegu.go.kr>

정보통신망

자체심사

우 700-714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 전화 (053)429-2335 / 전송 (053)429-2339
 회계과 과장 김영보 사무관 이재모 담당자 박원식 (hswonk@metro.taegu.kr)

문서번호 회계13310-21069

시행일자 2003.10.02. (1년)

공개여부 비공개

(경유)

받음 받는곳참조

참조

선 람	과 장		지 시	
	일자	2003.10.02		
접 수	시간	16:54	결 재 · 공 람	
	번호	21353		
처 리 과	회계과		경 리 담 당	
	담당자			장석
심사자			심사일	

제 목 '2003 수해복구예산조기집행지침 시달'

- 행정자치부 재정13310-1721(2003. 10. 1)호의 이첩입니다.
- 금번 9월 12일 발생한 태풍 매미((MAEMI)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불임과 같이 「2003 수해복구예산조기집행지침」을 시달하니,
- 원·본부, 사업소 및 구·군에서는 조기집행에 착오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3 수해복구예산조기집행지침(행자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지방회계예규 참조)1부 끝.

대구광역시

전결 회계과장 김영보



받는 곳 각실.과(거01~거45), 구.군(구01~08), 사업소(고01~고11), 사업소(며,처,커,터,폐), 사업소(며,처,커,터,폐, 허), 상수도(서04~서17), 소방서(버01~06), 원.본부(더,리,서,어,저), 의회사무처(너01,너02).

수해복구예산 조기집행 지침

2003. 9

행 정 자 치 부

목 차

I. 기본 방향

II. 수해복구예산의 신속한 집행

III.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IV. 수재의연금 지정기탁접수 및 집행철저

< 참고자료 > : 수해복구사업추진체계도

수해복구예산의 조기집행지침

- 지난 9월 12일 내습한 제14호 태풍 “매미(MAEMI)”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물 등의 피해를 신속·안전하게 복구하고
- 이재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해복구예산 조기집행지침임

I. 기본방향

-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한 신속한 예산집행
 - 위로금, 생계보조비, 이재민 응급구호비, 침수주택 특별위로금 등
- 공공시설물 등의 조속한 복구 실시
 - 복구가 요구되는 재해시설물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집행 및 긴급입찰실시 등 집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복구실시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 수해복구공사 등의 계약체결시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현장위주 철저한 설계 및 감리 실시

II. 수해복구 예산의 신속한 집행

1.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구호·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예산성립 전에 집행하고 동일회계년도내의 차기추경예산에 반영

※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4항

□ 예산배정 절차

- ① 국가예산(예비비) 배정(概算給 또는 確定給)

▶ 국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② 성립전 예산사용 요구

▶ 본청 실국장(실과장) → 예산담당관(기획감사실장)

- ③ 세출예산과목 설정 및 예산 배정

▶ 예산담당관(기획감사실장) → 실국장(실과장)

- ④ 예산집행품의 및 집행 : 해당사업부서 및 경리부서

□ 집행방법

< 이재민에게 직접 집행하는 경우 >

- 대상 : 위로금, 생계보조비, 이재민 응급구호비, 주택복구비 등

- 지급방법 : 성립전 예산집행 방법으로 즉시 집행

※ 수재의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집행하되 일반회계 집행절차에 따라 회계처리

< 관급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 지방비(예비비) 부담이 가능한 경우 총액(계속비)으로 계약

- 당해연도에 사업비 전액 확보가 곤란하거나 다소 늦어지는 경우에는 장기계속 계약방법으로 집행

① 총액으로 부기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되 교부된 국비 및 지방비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차수(1차) 계약으로 발주하고

②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를 차수(2차 이후) 발주 및 집행

※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 제2항

2. 자금부족시 대체재원 확보 대책강구

수해복구관련 예산집행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계현금의 전용, 일시차입금제도 활용 등 대체재원을 확보, 자금집행의 효율성 제고

□ 근 거

○ 일시차입금 (지방재정법 제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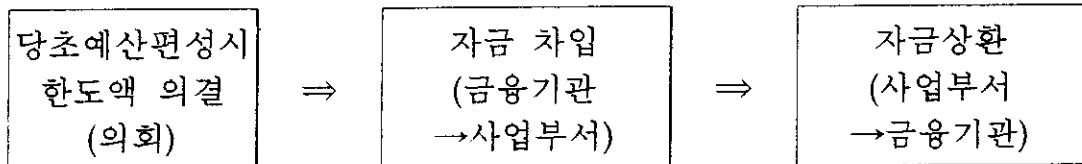
-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의회의결을 얻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후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

○ 세계현금의 전용(지방재정법 제65조)

- 일시자금 부족인 경우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후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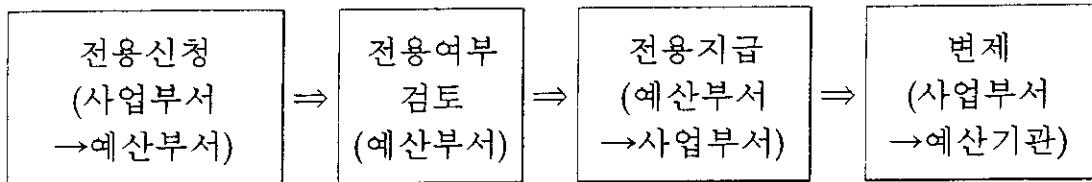
□ 대체재원 확보 절차

① 일시차입금



※ 자금상환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함

② 세계현금의 전용



※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않을 수 있음

3. 경쟁입찰인 경우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운영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긴급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

□ 긴급입찰공고제도 활용

일반경쟁입찰	수해복구관련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원미만 : 10일 ○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20일 ○ 50억원이상 : 40일 <p>* 현장설명 미실시 : 40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근 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 적격심사기간 단축

일반경쟁입찰	수해복구관련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서류제출 : 7일이내 ○ 서류보완 : 7일이내 ○ 심사 : 7일이내 ○ 심사연장 : 3일이내 ○ 이의신청 : 3일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서류제출 : 4일이내 ○ 서류보완 : 3일이내 ○ 심사 : 4일이내 ○ 심사연장 : 2일이내 ○ 이의신청 : 2일이내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8호)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

4. 수해지역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수해가 발생하지 않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되 『설계지원단』을 구성하여 자체설계가 가능한 공사는 자체설계 실시

□ 근 거

- 재해복구공사추진및품질관리운영규정(행정자치부 훈령)

□ 구성방법

- 시 기 : 수해복구대책 확정전까지
- 구 성
 - 수해피해가 경미하거나 없는 인근 시·도 및 시·군·구의 기술직 공무원과 토목측량사무소, 건축·토목설계사무소 직원 등
- 대 상 : 자체설계가 가능한 발주대상공사 의 설계 및 감리 등

□ 운영요령

- 시·도에서는 수해피해가 없는 시·도 및 시·군·구와 협의하여 기술직공무원으로 설계지원단 구성, 수해지역 시·군·구에 지원
- 민간참여 기술자는 국비에서 실비지급

III.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1. 수의계약제도 활용철저

- 수의계약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공사 등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업체의 시공능력, 시공여유율, 견적금액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수업체를 선정

□ 근 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 상대자 선정 가능

□ 대상사업 선정기준

- 긴급하게 복구하지 않으면 주민불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응급복구 사업

※ 예시 : 도로 응급복구사업, 산사태 응급복구사업, 제방응급복구사업 등

-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익년도 우기전까지 복구가 곤란하나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우기전까지 복구가 가능한사업

- 경쟁입찰과 수의계약간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

※ 절대 공기부족으로 수의계약으로 시공하더라도 우기전까지 완공이 곤란사업은 경쟁입찰 원칙

- 기타 아래 사유로 수의계약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 수해피해가 재발된 사업장의 직전 시공업체와의 수의계약
 - 개별법령 또는 국가계약법령상에 수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대상업체 선정기준

- 반드시 2인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대상업체 선정
 - 견적서 제출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 제출받지 말고 제출희망자는 모두 접수
- 업체선정시 해당 시·군 지역업체로 제한하지 말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 위주로 선정(단 1억미만 공사는 시·군 지역업체로 제한 가능)
 - 발주공사금액 보다 『시공능력공시액』이 큰 업체중에서 선정※ 시공능력 공시액 : 관련협회 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
 - 수해복구공사기간중 여러개의 다른 공사를 동시에 시공하여 시공여유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체는 가급적 시공참여 배제※ 시공여유율 : 보증회사(공제조합, 서울보증) 또는 건설행정정보종합시스템(CIS, 건교부 건설경제과) 등을 통하여 확인
 - 업체선정시 수해발생이전 당해 시·군 소재업체로 제한하거나 특정 1개 업체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사례 금지
- 추정가격 1억미만 공사는 시·군단위로 지역제한이 가능하며 회계예규 “수의계약운용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업체 선정

2. 업체의 시공능력을 고려한 제한경쟁입찰 실시

-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등에 따라 기술보유상황, 공사실적 등 업체의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제한
※ 무조건적인 지역제한 경쟁입찰방식은 자양

3. 설계 및 감리용역 철저

- 수해복구공사설계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하여 계약후 과다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공이 지연되거나 계약중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위주 설계 실시
- 시공감리계약시 현장상주 감리체제가 유지되도록 하여 부실 시공 예방대책 강구

4. 분할발주 계약제도 운영철저

단일사업의 공사중 1개 업체(공동도급자 포함)가 시행함으로써 공사 이행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경우 분할 발주제도를 활용하되 분할의 실익이 없는 경우 분할발주 지양

□ 근 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 내용

-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 ①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발주함이 효율적인 공사
 - ②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를 2~3개 구간으로 분할 발주

< 분할발주 금지대상 >

- 분할 발주하여도 공사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공기단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동일현장에서 공사구간을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시공상 혼잡 등으로 오히려 공기지연이나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경우
- 교량, 상·하수도 시설공사 등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분할할 경우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 분할계약 절차

- ①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분할계약 대상사업 선정
- ② 동일구조물 또는 단일구조물에 대하여 2~3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설계(또는 단일로 설계하여 분할발주)
- ③ 분할 부분에 대하여 각각 별도 발주하여 신속한 계약 및 시공

IV. 수재의연금 지정기탁 접수 및 집행 철저

수재관련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재의연금 지정기탁을
한정적으로 허용, 우선 의연금 재원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의연금 지급시에 동급액을 공제하여 지급

□ 근 거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및 『수재의연금품 모집관련 문제점 및 개선대책』(우리부 재경 13310-632, '98.10.10)
 -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
 - ▶ 자치단체는 모집자의 의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 < 수재의연금품 모집관련 문제점 및 개선대책 >
 - ▶ 출향인사 등이 특정자치단체를 지정, 의연금 기탁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우선 의연금으로 집행, 의연금 지급시에 공제

□ 지정기탁 접수 및 집행절차

- ① 지정기탁 의연금 접수(기탁자→자치단체)
 - 대상 : 기탁자가 특정자치단체로 지정한 의연금
- ② 지정기탁 의연금 집행(자치단체→이재민)
 -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의연금 재원 및 특별위로금으로만 집행
- ③ 집행결과 보고(자치단체→보건복지부, 전국재해구호협회)
- ④ 의연금 상계지급
 - 전국재해구호협회→자치단체→이재민

□ 집행방법 :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 및 집행

- 사업부서 집행요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집행

달성군

<http://www.dalseong.daegu.kr>

정보통신망

우 705-041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1동 1583번지 / 전화 053)668-2691 / 전송 053)668-2249
 회계과 과장 박경식 담당 신성진 담당자 박은주 ju0102@dalseongmail.net

문서번호 회계41341-453

시행일자 2003. 10. 14 (1년)

(경유)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보존기간	1년	군수
공개여부	공개	113 <i>[Signature]</i>
부군수		
국장		계약담당 <i>[Signature]</i>
과장	전결	
기안자	박은주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수해복구 공사·용역계약 추진계획 통보

금번 9월 12일 발생한 태풍『매미』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불임과 같이 「수해복구 공사·용역계약 추진계획」을 통보하오니, 사업부서 및
 읍·면에서는 사업이 조기시행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해복구 공사·용역계약 추진계획 1부. 끝.

달성군수

받는 곳 담당관·과·소·읍·면장.

문서번호	회계41341-
시행일자	2003. 10.
공개여부	

담당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
신성진	18753	67423	522	17753
협조	건설도시국장 18753			
	건설방재과장 18753			도로교통과장 18753
	하천 담당 18753			도로시설담당 18753
	상하수도 담당 18753			도로보수 담당 18753
	농지 담당 18753			

-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

수해복구 공사·용역계약 추진계획 (案)

달성군

-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용역 계약 추진계획(案)

I. 추진 배경

-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규모가 극심하여 복구비가 사상최대이고,
 - 우리 군 예상 복구비 : 677억원 정도
- 도로, 하천 등은 긴급복구가 시급하고, 수리시설은 시한영농을 위하여 내년 4월까지, 기타 수해피해 시설도 내년 우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여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수해복구 설계용역 물량이 과다하여 우수 용역업체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유치경쟁이 예상되고 있으며,
- 예산이 확정된 시기에 용역을 발주하면 연내 착공이 불가하며, 긴급 입찰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용역 설계 수행기간과 적격심사 등을 감안해 볼 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 국무총리특별지시 제13호(2003. 9.13), 행정자치부 『2003 수해복구예산 조기집행지침』에 의거 수의계약제도와 긴급 입찰제도 등을 활용하여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임.

II. 추진 방향

- 긴급 복구가 요구되는 공공시설물 등의 조속한 복구 실시
 - 각종 공사 집행절차 최대한 간소화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 현장위주의 철저한 설계 및 우수업체 선정을 통해 시공철저
- 수해복구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긴급 입찰제 및 수의계약제도 병행 확대 시행
- 지역업체의 수해복구공사 참여기회 부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단, 1억원 미만 공사는 관내업체 우선 참여

III. 추진 계획

□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긴급입찰공고)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
상대자 선정 가능

- 회계예규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4조(소액공사 수의계약)
- 국무총리특별지시 제13호, 행정자치부 『2003 수해복구예산 조기집행』

□ 대상사업 현황

○ 수해복구공사 규모별 현황 (잠정수치임) (단위: 건/백만원)

구분	계	1억이하	1억~1억5천	1억5천~2억	2억~2억5천	2억5천~3억	3억~4억	4억~5억	5억~10억	10억이상
계	207	126	16	10	6	7	13	12	9	8
	39,706	5,864	1,786	1,556	1,216	1,650	4,249	4,424	5,443	13,518
도로시설	91	62	6	3	2	2	7	4	3	2
	13,759	2,793	716	499	432	557	2,566	1,770	1,919	2,507
하천	87	44	8	5	3	4	4	8	5	6
	22,617	1,981	814	705	534	833	1,071	2,654	3,014	11,011
수리시설물	29	20	2	2	1	1	2		1	
	3,330	1,090	256	352	250	260	612		510	

○ 설계용역 예정물량

(단위: 건/백만원)

구 분	용 역		시 공		비고
	예정건수	예정금액	예정건수	예정금액	
계	59건	1,791	207건	39,706	
도로 시설	29	551	91	13,759	
하천	22	1,118	87	22,617	
수리시설	8	122	29	3,330	

□ 추진 방법

1. 긴급 경쟁입찰

- 대상사업 : 공사기간 부족으로 익년도 우기시까지 완공이 곤란한 사업
- 공사규모별 기준
 - 일반건설업 (일반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사
 - 전문건설업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4천만원 이상인 공사

2. 수의 계약 : 설계용역 및 해당 복구사업

- 설계용역 : 59건 1,791백만원 정도
※ 실시설계 용역내역 : 붙임 참조
- 대상 사업
 - 소규모 및 우기전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공사
 - 주민불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조기복구 가능사업
 - 기타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정금액 이하의 응급복구사업
- 공사규모별 기준
 - 일반건설업 (일반공사)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공사
 - 전문건설업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4천만원 미만 공사

○ 대상 업체 선정기준

-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업체
 - 시공능력공시액이 당해공사의 1배 이상인 업체
 - 면허 등록년수, 업종수,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
 - 공사감독 편의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업체별로 인접지역 선정
 - 특수 및 복합공정 공사는 우수업체에 기회부여
 - 수해응급복구시 무상으로 장비 및 인력지원 업체
 - 수재 구호물품(성금포함)지원 업체
- ※ 수해복구 공사기간 중 여러 개의 공사를 과다시공하여
시공 여유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체는 참여 배제

○ 수의계약 방법 - 반드시 2인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 받아
대상업체 선정

※ 견적서 제출 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견적 제출자도 직접
참석하여 서류제출(견적제출 의무업체 모두 접수)

※ 제출서류(본인과 타인 모두 동일하게 제출)

- ①견적서
- ②사업자등록증사본
- ③건설업등록증사본
- ④면허수첩사본
- ⑤법인등기부등본
- ⑥법인인감(법인의 경우)
- ⑦사용인감계(필요시)
- ⑧정부수입인지(금액별)

□ 분할발주 계약제도 운영

- 단일사업의 공사중 1개 업체(공동 도급자 포함)가 시행함으로써 공사이행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경우, 분할 발주제도를 활용하되
- 분할의 실익이 없는 경우 분할발주 지양

1. 내용

-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 ①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발주함이 효율적인 공사
 - ② 하자 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를 2~3개 구간으로 분할 발주

* 분할 발주 금지 대상

- 분할발주 하여도 공사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지 않을것이 예상되어 공기단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동일현장에서 공사구간을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시공 상 혼잡 등으로 오히려 공기지연이나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경우
- 교량, 상·하수도 시설공사 등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분할할 경우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2. 분할계약 절차

-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분할계약 대상사업 선정
- 동일구조물 또는 단일구조물에 대하여 2~3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설계 (또는 단일로 설계하여 분할 발주)
- 분할 부분에 대하여 각각 별도 발주하여 신속한 계약 및 시공

IV. 협조사항

- 설계내역 검토 및 심사 철저 : 해당 사업부서
- 연내 발주를 감안 최대한 분할하여 용역기간 단축
- 용역설계는 수행능력을 감안한 적정한 배분계약
-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내용은 자체설계
- 시공감독 철저(부실시공 발견시 강력한 조치)

참 고 자 료

【타시도 수해복구공사 계약사례】

기관명	복구예산규모	계약방법	
		설계용역	공사
김천시	4,500억	50,000천원이하 수의계약	추정가격 1억원 (전문7천만원)이하 수의계약
			추정가격 1억원~ 3억이상 관내 간이입찰
거창군	1,562억	수의계약	전체 관내 수의계약 (교량가설공사제외)
함양군	2,370억	수의계약	추정가격 10억원 이하 수의계약

【관내 건설업체 현황】

- 일반건설업 : 9 개 업체
- 전문건설업 : 109 개 업체

철근 콘크리트	토공	석공	상하수도	포장	철물	보링 그라우팅
64	38	4	19	4	13	1